# 2022년 상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국세청, 2020. 10

## 1 사업자등록 안내

### ▣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1부**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2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 ▣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 ·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3 홈택스 이용 방법

### ▣ 홈택스란?(www.hometax.go.kr)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 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통해 회원 가입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통한 본인인증 필요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2만원)

###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입력, 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 My홈택스

- 세금신고 · 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홈택스(hometax.go.kr) → My홈택스(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민원분야 서비스

| | |
|---|---|
| 즉시발급 증명 민원 |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5종 발급 신청<br>* 2020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제공 |
| 사실증명 신청 |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br>* 신청 후 3 근무시간 내 처리(사실 여부 검토 필요) |
| 민원신청 조회·팩스전송·전자문서 지갑 | ▶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한 사무 모두 조회<br>증명민원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 가능 |
|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
| 민원증명 원본 확인 (수요처 조회) | ▶ 발급번호 혹은 바코드로 원본 확인 |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 별도 로그인 없이 실시간 대기인원 조회 |
| 민원증명 발급 예약(방문 수령) | ▶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한 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 수령 |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서비스 |
| 휴·폐업 신고 | ▶ 휴·폐업 신고하는 서비스 |
| 재개업 신고 |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
| 일반신청 민원 | ▶ 신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송달장소 신고 등 108종 민원 신청 |
| 불복청구 |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 관련 25종 |

# 4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 국세증명 | | | 온라인 발급시간 | 발급 창구 | | | | | | |
|---|---|---|---|---|---|---|---|---|---|---|
| | | | | 방문 | 홈택스 | 모바일 | 무인민원 | 정부24 | 민원우편 | 어디서나 |
| ① 사업자등록증명<br>② 휴업사실증명<br>③ 폐업사실증명 | | | 연중무휴 24시간 | ○ | ○ | ○ | ○ | ○ | ○ | ○ |
| ④ 납세증명서<br>⑤ 납부내역증명<br>⑥ 소득금액증명<br>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br>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연중무휴 08:00 ~ 22:00 | | | | ○ | ○ | ○ | ○ |
| ⑨ | 소득 확인 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 | | ○ | ○ | ○ | ○ |
| ⑩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용 | | | | | × | ○ | × | × |
| ⑪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 | | | | | × | | |
| ⑫ | | 청년희망적금가입용 | | | | | | | | |
| ⑬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 | | × | ○ | ○ | ○ |
| ⑭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 | | | ○ | | | |
| ⑮ 모범납세자증명<br>⑯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 연중무휴 24시간 | | | | | | | |
| 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 ○ | ○ | ○ | ○ |
| ⑮ 사실증명 | 유 형 | | [신청] 연중 09:00 ~ 24:00<br>[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신청 후) | ○ | ○ | ○ | × | ○ | ○ | ○ |
| | (1) 신고사실 없음 | | | | | | | × | × | × |
| |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 | | | |
| | (3) 체납내역 | | | | | | | | | |
| | (4)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 | | | | | | | |
| |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 | | | | | | | |
| | (6) 대표자등록내역 | | | | | | | | | |
| | (7) 공동사업자내역 | | | | | | | | | |
| | (8)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 | | | | | | | |
| | (9) 전용계좌개설여부 | | | | | | | | | |
| | (10)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 | | | | | | | |
| | (1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 | | | | | | | |
| | (12) 총사업자등록 내역 | | | | | | | | | |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⑬, ⑯이 가능하며, 방문과 홈택스, 모바일에서 발급함

※ 영문사실증명은 (2), (5), (6), (7) 가능(방문, 홈택스, 모바일에서만 신청 · 발급)

| 발급 창구 | 이용방법 | |
|---|---|---|
| 방문 | 세무서 민원실 또는 지자체 통합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 |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① ~ ④, ⑮는 공동·금융공인인증서 불필요 |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 무인민원 | 주민번호 및 지문인식,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대표자) 이용가능 | |
| 민원24 | 정부24(gov.kr)에서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
| 민원우편 | 우체국에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우편요금 발생) | |
| 어디서나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 |

##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 | | |
|---|---|---|
|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
| | 의무발행 업종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밑줄 친 업종은 20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 |
|---|---|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 보 건 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 한정) |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 기타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거울, 액자, 주방용 유리제품, 관상용 어항 소매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 현금영수증을 가공 ·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

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음식 · 숙박업 간이사업자 | 그 외 사업자 |
|---|---|---|
| '21.1.1~'21.6.30 | 2.6% | 1.3% |
| '21.7.1..~'23.12.31. | 1.3% | 1.3% |
| '24.1.1.~ | 1% | 1% |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구 분 | 지급사유 | 포상금 지급액 |
|---|---|---|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금액의 20%<br>(한도 : 건당 50만원,<br>연간 200만원) |
| 발급거부 | 의무발행업종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

## 6 부가가치세 안내

### ▣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 |
|---|---|
|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2]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이 아닌 경우[2]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3]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적용 배제 |

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2)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3)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br>납부기간 |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 ·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br>납부기한 |
|---|---|---|---|
| 일반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br>(1.1.~3.31. 실적) | 4.1. ~ 4.25. |
| | | 제2기<br>예정신고(7.1.~9.30.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신고의무 부여) | 예정부과기간<br>(1.1.~6.30. 실적) | 7.1. ~ 7.25.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급대가)×0.5%) |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업 종 |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1],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 6-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대상 | 전자발급 의무기간 |
|---|---|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 부터 |
| 개인사업자<br>-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택 |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br>▸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b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br>*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br>▸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br>▸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br>▸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br>▸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br>* 2019. 1. 1.부터 시행 |

##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연월일 |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

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접속·'마크애니'검색·설치** |
|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 ⇨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

###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 ·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7 종합소득세 안내

###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br>•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21년 귀속 소득기준)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 | |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수입금액 |
|---|---|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용계좌 제도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 7-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 |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br>•[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업종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
|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1억 5천만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 2천4백만원 | 7천 5백만원 |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2년 5월(2021년 귀속) 신고시, 직전연도(2020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 주요경비의 범위

| | |
|---|---|
| 매입비용<br>(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 합니다.

## 8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병 · 의원, 학원,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아래 가산세 대상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 ▣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적용대상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 9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과세기준

▸ 보유 주택수별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 ▣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 ▣ 소득세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 6~45%)와 분리과세(세율 :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원천징수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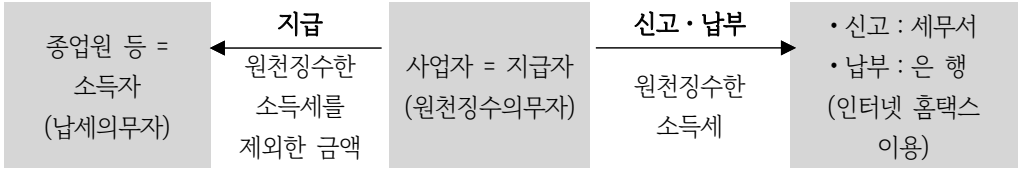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소득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 |
|---|---|
| 상용 근로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br>•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br>•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
| 퇴직·종교인소득 | • 다음 연도 3월 10일 |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0.125%

| 해당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 |
|---|---|
|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종교인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 ·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일용지급명세서 제외)를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사업소득)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근로소득) 3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 대리, 퀵,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미제출, 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미제출) 건별 20만원, (허위제출, 일부미제출) 건별 10만원

## 1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 |
|---|---|
|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
| 지원범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br>*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 나눔세무(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 신청 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br>▶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 권리침해 유형 | | 조치사항 |
|---|---|---|
| 세무조사 |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
| |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
| 일반 국세 행정 |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br>•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 공통 |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 13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심의대상

| 구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
| 세무조사 분야 | ① 위법·부동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재심의 ①②③ |
| | ②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 |
| | ③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
| |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 |
| 일반국세 행정분야 | •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br>•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br>•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
| 심의요청 |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결정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14 불복청구 절차

###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사후 권리구제 제도

| | |
|---|---|
|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
| 심사청구<br>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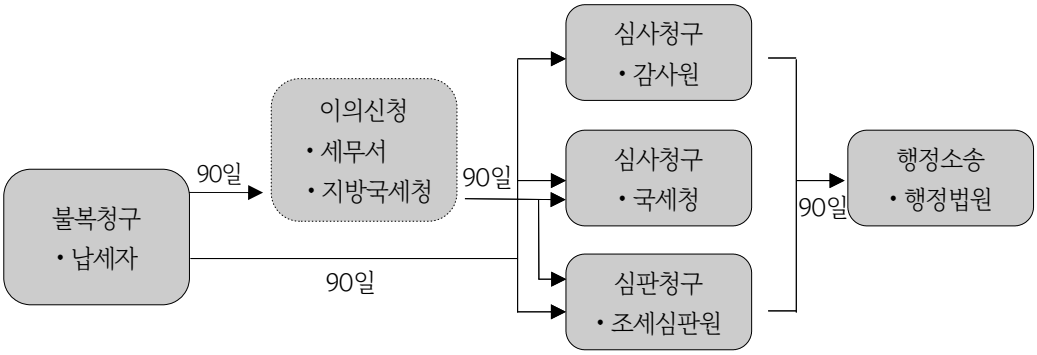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 작성요령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